<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 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 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 니다.

2. <u>가맹계약을 체결</u>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 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 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 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장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231196

BREWING TOTE

최초 등록일 2023.08.22

www.tote.coffee

최종 등록일 2024.06.04

"브루잉토트"

정보공개서

주식회사토트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4. . .

[주식회사 토트]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 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84

- T. 080-850-2778 F. 051.714.7355
- E. tote @kakao.com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п.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Ш.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	자의 부담
٧.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 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알림마당'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 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 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 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브루잉토트	부산된	광역시 금	정구 중앙대로 17	784	
주식회사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토트	2022.02.04	2022.02.22	김리원	051-714-4919	051-714-7355	
	법인등록번호	180111-1420370	사업	자등록번호	451-81-02883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	영업표지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	구 중앙대로 1784
본인	김리원	브루잉토트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080-850-277	051-714-7355
			경상남도 진주시	가호방아길 51-8
배우자	윤기남	더웨이닝커피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080-020-2770	051-527-2770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있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 · 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브루잉토트]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브루잉토트	브루잉커피의 대중화
상 호	브루잉토트 ○○점	
상표(서비스표)	BREWING TOTE	서비스표 등록번호: 4020210225474
광 고	해당없음	
그 밖의 영업표지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3년	177,700	176,234	1,465	339,697	12,031	12,067
2022년	95,503	106,105	-10,602	195,396	-20,755	-20,602
2021년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별첨-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첨부]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1 원인역구	디디	선 식귀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김리원	대표이사	2022-02-04 ~ 현재	대표이사	회사 업무 총괄	
가맹사업 비관련 임원	최순희	이사	2022-02-04 ~ 현재	사내이사	운영관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	수(명)	직원수(명)
시점	상근	비상근	주천구(경)
2023.12.31	1	1	5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특수관계인 (배우자)	윤기남	가맹사업 경영	2018.03.31. ~ 현재	더 웨이닝커피 라는 영업표지의 커피전문점 사업 경영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 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브루잉토트 (상표권)	BREWING TOTE 브루영 토트	출원 2021.11.05. 등록 2022.05.27.	출원 제40-2021-0225474 등록 제40-1872478호	윤기남	2032.05.27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가맹본부의 [브루잉토트] 가맹사업 현황

1. [브루잉토트] 을 시작한 날: 2023년 3월 10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2022년 2월 22일)

2. [브루잉토트]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식회사토트	브루잉토트	김리원	해당 없음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 1784

3. [브루잉토트] 업종

영업표지	업종		
H르이FF	대분류	소분류	
브루잉토트	휴게음식업	커피숍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브루잉토트]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2	2021.12.3	1	2	2022.12.3	1	2	2023.12.3	1
지역					_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_	_	_	_	_	1	-	2	1
서울	_	_	_	_	_	_	-	_	_
부산	_	_	_	_	_	1	-	1	1
대구	_	-	_	_	-	_	_	_	_
인천	_	_	_	_	_		_	_	_
광주	-	_	_	_	_	_	-	_	_
대전	-	_	_	_	_	_	-	_	_
울산	-	_	_	_	_	_	_	_	_
세종	_	_	_	_	_	_	_	_	_
경기	_	_	_	_	_	_	_	_	_
강원	_	_	_	_	_	_	_	_	_
충북	_	_	_	_	_	_	_	_	_
충남	_	_	_	_	_	_	_	_	_
전북	_	_	_	_	_	_	_	_	_
전남	_	-	_	_	_	_	_	_	_
경북	_	-	_	_	_	_	_	_	_
경남	_	-	_	_	-	_	_	1	_
제주	_	_	_	_	_	_	_	_	_

5. 바로 전 3년간 [브루잉토트] 가맹점 수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_	_	_	_	_	_
2022	_	_	_	_	-	_
2023	0	2	_	_	_	2

6. [브루잉토트]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브루잉토트]외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 내역입니다.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업종	가맹점 / 직영점의 수		
十 七	^g 오/ 기급	0 日亚기	등록번호	но	21.12.31	22.12.31	23.12.31.
특수관계인 (배우자)	㈜웨이닝코리아	더웨이닝커피	20120300012	커피	41/3	43/2	43/2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 정기준

[브루잉토트]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지역 2023년 가맹점수	_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비고
	/ 가맹점구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2	134,772	8,916	134,772	8,916	134,772	8,916	
서울	_	해당없음						
부산	1	해당없음						5곳미만
대구	_	해당없음						
인천	_	해당없음						
광주	_	해당없음						
대전	_	해당없음						
울산	_	해당없음						
세종	_	해당없음						
경기	_	해당없음						
강원	_	해당없음						
충북	_	해당없음						
충남	_	해당없음						
전북	_	해당없음						
전남	_	해당없음						
경북	_	해당없음						
경남	1	해당없음						5곳미만
제주	_	해당없음						

[당사의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가맹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경남지역의 경우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수치로 포함하였으나, 2023년 9월 이후 영업을 개시한 1개 가맹점(해운대자이점) 매출액은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매출액 추정 근거자료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표에서 기재한 연간 평균 매출액은 전체 가맹점 수 2개가 아닌 실제 1개 가맹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추정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8. [브루잉토트]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브루잉토트]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 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2	234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직접 가맹점을 관리하지 않으면서 본사의 지사형태로 운영하거나 다른 기업(총판, 대리점) 등으로 운영하는 곳이 없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브루잉토트]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 과 같습니다.

구분	수단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수단 기간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광고	없음					
판촉	없음					

11. 가맹금 예치

당사는 가맹점 사업자 피해보상보험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가맹금 예치기관이 없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주)]과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보험인(보험회사)	서울보증보험(주)	
보험계약자	주식회사 토트	가맹본부
피보험인(보험금을	기메라시아기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보험기간	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보험금액	1,400만원	
보장범위	가맹금 반환 지급 보증	
지급조건	계약 불이행시	
보험금의 수령절차	서울보증보험에 청구서 제출	평균1~2개월 소요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이상의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브루잉토트]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단위:천원)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할 필요 없음	11,000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할 필요 없음	3,000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110,000~120,000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11,000]				
가맹계약금	5,500	2.1.2.2.2.5		영업 표시의 사용, 승인등의 대가	
교육비	3,300	계약체결후 1일 이내	반환되지 않음	매뉴얼 및 운영교육	2개월 보증기간 이후 소멸
오픈지원비	2,200			운영 원활을 위한 현장지원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3,000]			
가맹 보증금	3,000	계약 체결 후 1일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대금의 미지급, 물품 파손 등	계약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잔존 채무를 정산 후 반환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14,000
최초계약금	11,000
가맹보증금	3,0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 및 비품의 상세 내역은 첨부한 별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m ² 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89,900~ 99100]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협력업체)	31,900	3,190	내부 인테리어 공사 시작 3일 이후	공사 전 계약취소	33㎡ 기준 3.3㎡ 늘어날 때마다 3,190천원씩 추가부담 별도(화장실, 테라스, 어닝 외장공사 등)
최초 공급 상품 비용	주식회사 토트	7,700~ 9,900		물품 공급 1일 이전	상품 미공급시	
설비기기	주식회사 토트	47,000~ 54,000		물품 공급 1일 이전	상품 미공급시	
가구	(협력업체)	3,300		물품 공급 1일 이전	상품 미공급시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1)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 → 가맹계약
(전화:080-850-2778)	2)점포 지정 후 상담 요청 → 담당자 현장방문 → 입지 및 상권조사 → 가능성 여부 판단 후 협의 → 가맹 계약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20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브루잉토트]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물품의 상세 내역은 첨부한 별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비고	
-------------------------------	--

				없는 사유	
상표사용료	주식회사 토트	월 220	다음 월 5일		
리스료		해당없음			
광고 분담금		해당없음	다음 월 20일		
판촉분담금		해당없음			
교육훈련비	주식회사 토트	해당없음	교육 실시 10일 이전		교육 필요시 협의 후 지급
간판류 임차료		해당없음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협력업체)	5,500~8,800	간판 변경 후 2일 이내		계약 연장시 변경이 진행될수 있으며, 비용은 기맹점에서 부담
영업지역 보장금		해당없음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협력업체)	16,500 ~ 33,000	교체·보수 후 5일 이내		교채보수 필요시 시설, 기기 등의 내구연수 등을 감안하여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
점포환경개선 비용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재고관리 비용		해당없음			
회계처리 비용		해당없음			
POS 사용료		해당없음			
지연이자		해당없음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운영관리	고객 서비스 등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관리	월 1회	
회계처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 조사 실시	1년 1회	문의 : 주식회사 토트 (080-850-2778)
장비관리	설비상태에 대한 점검	월 1회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지급해야 하는 별도의 비용은 없습니다.

[당사는 계약종료 시점에 점포 위치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가맹점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사가 판단하여 협의한 결과 가맹점도 이에 동의하면 점포 이전비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 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 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 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브루잉토트]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주식회사토트]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보증금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조건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정보공
	개서 제공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
당사가 정해 놓은 가맹점사업자 조건에 부합	함, 1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
	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교육비	3,300
(현금)보증금	3,000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는 상호·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관리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종료에 책임 있는 당사자

가 부담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고 일정범위 내 $(10\%\sim90\%)$ 에서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브루잉토트]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 ·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자세한내용-별지4참조)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귀하가 위 표의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당사는 부동산, 용역, 설비,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과 관련하여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는 특수관계인이 없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 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필터커피			
카페오레			
콜드브루			
에쏘가토			
샤케라토		1원 이미 - 그도 권크	
에스프레소		1회 위반 : 구두 경고	
아메리카노	이쬬세 카케티	이렇 이네 그 이렇 시시.	
카페라떼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2회 위반 : 2회 이상 서면 시정 요구	
바닐라라떼	의되의 제품들 판매할 수 없음	시한 시장 호기	
돌체라떼	也叫這 丁 取百	3회 이상 위반 : 계약	
아이스크림라떼		하지	
딥모카		311. 1	

드 드 기 레
토트라떼
토트더블샷 복숭아아이스티
레몬에이드
스트로베리초코라떼
초콜릿라떼 그리디리.떼
그린티라떼
밀크티라떼
펼자두에이드 로 시시 세시도
펼샤인에이드
머스켓레몬티
다즐링레몬티
고요그린티
로즈캐모마일
슈가루이보스
밀크쉐이크
커피쉐이크
스트로베리쉐이크
자두스무디
레몬스무디
밀크아이스크림
초코아이스크림
딸기아이스크림
소금토스틱
참깨토스틱
버터스콘바
월넛스콘바
블루베리잼스콘바
라즈베리잼스콘바
버터프렌치토스트
솔티드프렌치토스트
크룽지
버터풀파이
클래식초코쿠키
코코넛버터쿠키
화이트마카다미아말차쿠키
치즈볼 오리지널
치즈볼 먹물
치즈볼 할라피뇨
밀크사브레쿠키
아몬드초코쿠키
크랜베리치즈쿠키
황치즈쿠키
얼그레이레몬쿠키
흑임자사브레쿠키

휘낭시에 크림치즈	-시에 크림치즈	치즈	
휘낭시에 초코칩	궁시에 초코칩	<u> </u>	
휘낭시에 다크초코	·시에 다크초코	초코	
그 외 본사 진행 중인 메뉴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에 따른 상품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고객	자점 메뉴	상품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은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 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 , ,	_ , _ , _ , , ,		
사프며	긔 자기 거	기거 토ㅂ 바버	ਸੀ ਹ

필터커피	3500		
카페오레	4000		
콜드브루	3800		
에쏘가토	2900		
샤케라토	2900		
에스프레소	2500		
아메리카노	2500		
카페라떼	3500		
바닐라라떼	3800		
돌체라떼	3800		
아이스크림라떼	4600		
딥모카	4600		
토트라떼	3800		
토트더블샷	3800		
복숭아아이스티	2800		
레몬에이드	3300		
스트로베리초코라떼	4000		
초콜릿라떼	4000		
그린티라떼	4000		
밀크티라떼	4000		
필자두에이드 -	4300		
펼샤인에이드	4300	 가격변경 시 발주	
머스켓레몬티	4600	사이트 및 유선을	2023.12월 기준
다즐링레몬티	4600	통해 공지	
고요그린티	3500		
로즈캐모마일	3500		
슈가루이보스	3500		
밀크쉐이크	4000		
커피쉐이크	4000		
스트로베리쉐이크	4000		
자두스무디	4300		
레몬스무디	4300		
밀크아이스크림	3800		
초코아이스크림	4000		
딸기아이스크림	4000		
소금토스틱	1500		
참깨토스틱	1500		
버터스콘바	2600		
월넛스콘바	2900		
블루베리잼스콘바	3300		
라즈베리잼스콘바	3300		
버터프렌치토스트	2200		
솔티드프렌치토스트	2200		
크룽지	3600		
버터풀파이	3600		

클래식초코쿠키	3300
코코넛버터쿠키	3300
화이트마카다미아말차쿠키	3800
치즈볼 오리지널	3500
치즈볼 먹물	3500
치즈볼 할라피뇨	3500
밀크사브레쿠키	5000
아몬드초코쿠키	5000
크랜베리치즈쿠키	5000
황치즈쿠키	5000
얼그레이레몬쿠키	5500
흑임자사브레쿠키	5500
휘낭시에 크림치즈	1500
휘낭시에 초코칩	1500
휘낭시에 다크초코	1500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 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돈이칠 어조 바이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동일한 업종 범위	가맹본부	계열회사	
커피외 다양한 음료와 베이커리를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브루잉토트	해당 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인구1만명 당 1점포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1km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 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 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记用 省立 自省 716)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 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브루잉토트'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 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 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브루잉토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32.58%	67.42%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10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브루잉토트]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 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_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협력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채무의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7조 2항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브루잉토트]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	약조문
가맹점사업자가 점포의 규모·대표자 등의 가맹점의 표시에 해당하는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3조2항 및 3항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허용한 영업표지의 사용범위 외에 서면 동의 없이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4조3항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보유한 영업표지를 변경하여 사용하 거나 양도한 경우	4조3항의 4	
가맹점사업자가 로열티 및 공급품 대금의 납입을 3회 이상 연체한 경우	16조	25조 각호 및 32조1항1호
가맹점사업자가 개점이후 교육참석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 부하는 경우	17조	
가맹점사업자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18조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제3자로 하여금 경업금 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9조	
가맹점사업자가 관리감독 기준에 의한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는 경우	21조	
가맹점사업자가 승인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통일성		
유지를 위한 요구 품목을 사용하지 않아 가맹사업의 통일성	22조 1항~4항	
을 저해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사전협의 없이 잦은 가격변동의		
행위 등으로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더웨이닝커피"명성을	22조 5항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에 대하여 가 맹점 판매 용도 이외로 사용할 경우	23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승인받지 않고서 요구 품목을 자점매입 하거나 품질검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	24조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복장규정을 위반하거나 영업	27조	
시간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후시설보수를 거부하는	28조 1항 및 3	
경우 및 가맹점 환경을 청결히 유지하지 않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가맹점설비를 임의적	하	
으로 변경하는 경우	28조 6항	
가맹점사업자가 회계자료 통지 등의 통지의무를 다하지 않 는 경우	29조	
가맹점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되는 광고의 광고비 분담을	30조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되는 판촉활동에 정당한 이유	01 7 0~[-7]	
없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31조 2~5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판촉물 등을 제작하	01 기 기기	
여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31조 7항	
가맹점사업자가 사전승인 없이 양도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36조 1항	
기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가맹본부의		
명성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할 경	25조 21호	
<u>+</u>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3개월 이상 개점이 지연되거나	32조 1항 2호	
최초 개설 비용의 지급을 지키지 않는 경우	54도 1양 4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가맹점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훼손한 경우 1) 그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2)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3)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한 경우 	32	조 3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과징금·과태료 등의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을 통보받고도 행정청이 정한 시정기한(시정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 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 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ㅇ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
- ㅇ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 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주식회사토트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 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 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 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시	모든 권리의무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업무위탁	본부 승인시 가능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가맹사업자]가 [브루잉토트]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일반인에게 원두커피 등을 사용하여 커피음료 등을 매장 내 및 테이크 아웃방식으로 제공하는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 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주식회사토트 (080-850-2778)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브루잉토트]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08:00~21:00	연중 무휴 원칙	문의: 주식회사토트 (080-850-277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사로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2명 이상	직접 근무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점주의 부재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부서	비고
매장 청결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1개월		
친절도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 → 주문 → 친절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1회/1개월	본사	
품질 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1개월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표는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주식회사 토트와 귀하가 각 1부씩보관하게 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브루잉토트"의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한 비용은 본사가 100% 부담한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 판촉 활동

[가맹점 사업자는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당사의 사전 승인없이 별개의 광고 및 판촉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 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 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 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 · 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7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7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6~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4~31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가맹금 예치	- OO기관에 가맹금 예치	D-29(1일)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4~5(20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7~4(3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

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가맹본부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ㅇ점포의시설,	○간판교체비용	ㅇ점포의 확장	○가맹점사업자	○점포환경개선	
장비, 인테리	ㅇ인테리어 공	또는 이전을	의 비용 청구	일로부터 3년	
어 등의 노후	사비용(장비·	수반하지 않	(공사계약서	이내에 가맹	
화가 객관적	집기의 교체	는 점포환경	등 공사비용	본부의 책임	
으로 인정되	비용을 제외	개선 : 20%	을 증빙할 수	없는 사유로	
는 경우	한 실내건축		있는 서류 첨	계약이 종료	
ㅇ위생이나 안	공사에 소요		부) → 90일	(계약의 해지·	
전의 결함으	되는 일체의		이내에 가맹	영업양도 포	
로 인하여 가	비용. 단, 가		본부 부담액	함)되는 경우	
맹사업의 통	맹사업의 통		을 가맹점사	가맹본부 부	
일성을 유지	일성과 무관		업자에게 지	담액 중 잔여	
하기 어렵거	하게 가맹점		급	기간에 비례	
나 정상적인	사업자가 추		(단,가맹본부와	하는 부담액	

الململ الململ	-) -) 1	_1_11=1 \1.61_1=1	0 -1 -1 -1	
영업에 현저	가 공사를 실	가맹점사업자간	은 지급하지	
한 지장을 주	시함에 따라	별도의 합의	아니하거나	
는 경우	소요되는 비	가 있는 경우	이미 지급한	
	용은 제외)	1년의 범위내	경우에는 환	
		에서 분할지	수 가능	
		급 가능)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		
		는 가맹본부		
		가 지정한 자		
		를 통하여 점		
		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		
		이 끝난 날부		
		터 90일 이내		
		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		
		급		
		- - - - - - - - - - - - - - - - - - -		
		차>		
		○가맹점사업자		
		의 비용 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		
		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		
		부) → 3차에		
		걸쳐 가맹본		
		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		
		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		
		액의 30%, 2		
		차 : 1차 지		
		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		
		부터 60일 이		
		내, 총 부담액		
		의 40%)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별도)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개점행사비	가맹점 오픈시 판촉인원 파견 및 전단지, 기념품 등의 판촉비용 지원	가맹점의 매장면적, 예상매출액에 따라 판촉인원 수 및 판촉비용 차등 지원	오픈일로부터 5일간		
판촉장려금		없음 (전 가맹점 해당)			
판촉지원		없음 (전 가맹점 해당)			
판매용 집기		없음			
무상대여		(전 가맹점 해당)			
반품지원	시즌행사(크리스마스 , 연밀연시 가정의 날 등시 출시되는 제품류 중 일정한 품목에 대하여 반품지원	시즌행사 제품류 중 반품지원 품목 지정상품에 한함	시즌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	가맹점 매입금액의 80% 인정하여 지원금액 산정	
CRM		없음 (전 가맹점 해당)			
테스터	고객이 사용할 수 있는 테스터공급 지원	출시 되는 제품에 따라 차등 지급	선	소요되는 비용 전액 당사 부담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 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 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 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 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 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 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 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 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주식회사토트 (080-850-2 778)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의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 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 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 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맹본 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 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 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 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 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기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주식회사토트 (080-850-2 778)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브루잉토트]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해당없음	해당없음				

W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브루잉토트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회사 소개 레시피 교육 POS 사용, 입금 방법 등	실습교육, 현장실습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필수 교육
보수 교육	신메뉴 제조방법 종업원 관리 실무 등	실습교육	매년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브루잉토트]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신규 교육	8일	3,300	최초 계약시 이수
보수 교육	3일	_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10조에 따라 1개월 내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기한내 보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17조에 따라 1개월 내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여받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부산	부산부곡점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84 1층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1년 10개월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298,757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직영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끝-

- ①별첨1 가맹점의 인테리어 공사내역
- ②별첨2 설비 비용의 내역
- ③별첨3 집기 구입비용
- ④별첨4 물품 구입 및 임차 리스트
- ⑤별첨5 주요품목별 직전사업연도 공급가격 상하한
- ⑥별첨6 간판 및 사인물 구입비용
- ⑦별첨7 관리감독 체크리스트

별첨1 - 가맹점의 인테리어 공사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별첨2 - 설비비용의 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별첨3 - 집기 구입비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별첨4 - 물품 구입 및 임차 리스트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별첨5 - 주요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별첨6 - 간판 및 사인물 구입비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별첨7 - 관리감독 체크리스트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